의귀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 12. 24.)

건설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812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현장접수 시 유의사항

□ 현장접수 방문 시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하며, 체온측정을 진행하여 **발열이 있는 경우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접수처 출입을 제한**합니다.

□ 현장접수처 전 구역 KF94이상 의무착용을 실시할 예정이니 해당 마스크를 착용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처 전 구역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할 예정이며, 접수처 내 공용물품 또한 1일 1회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미숙지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2년 단위 재계약시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공급일정 및 신청안내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공고	현장접수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및 소명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입주
['20.12.24.]	['21.01.10 ~21.01.12]		[21.04.29]	['21.05. 예정]	['21.06.예정]

■ 현장접수 : 2021.01.10.(일) ~ 01.12.(화) 10:00 ~ 17:00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6 1층 서귀포권역 주거복지센터

*** 현장 신청접수시 제출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라며, 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064-780-3592~5)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됩니다.
- 이 주택은 현재 건설중으로 계약 및 입주예정월은 준공 일정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합니다.
-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064-780-3592~5)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공급형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입주예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우선공급 (다자녀가구)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기타공용	지상주차장		
59A	7	4	3	14	59.755	18.465	8.646	1.099	87.965	'21년 6월
59B	7	3	4	14	59.630	18.564	8.627	1.097	87.918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중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 됩니다.**
 (또한,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관리됩니다.

■ 임대조건

공급형	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	계약금	잔금				
59A	18,424,000	3,684,800	14,739,200	292,160	(+) 9,000,000	27,424,000	247,160
					(-) 10,000,000	8,424,000	312,990
59B	18,418,000	3,683,600	14,734,400	292,050	(+) 9,000,000	27,418,000	247,050
					(-) 10,000,000	8,418,000	312,880

-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지원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지원시 표준임대보증금의 전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모델하우스, 샘플하우스가 없으므로 단지여건 등 주택 내외 환경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상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증액시 이율 **6%**, 임대보증금 감액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모집 후 당첨자의 계약포기 및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1년 06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잔금납부 확인 및 시설물 점검이 완료된 시점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우선공급

- **다자녀 가구**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

■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 (단독세대주 제외)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것

※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첨부문서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함)**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th></tr>
<tr><td colspan="2">소득</td><td>
<table>
<tr><th>가구원수</th><th>월평균소득기준</th><th>참고사항</th></tr>
<tr><td>2인 가구</td><td>3,065,866원 이하</td><td rowspan="7">*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td></tr>
<tr><td>3인 가구</td><td>3,938,828원 이하</td></tr>
<tr><td>4인 가구</td><td>4,358,439원 이하</td></tr>
<tr><td>5인 가구</td><td>4,856,848원 이하</td></tr>
<tr><td>6인 가구</td><td>5,315,858원 이하</td></tr>
<tr><td>7인 가구</td><td>5,774,868원 이하</td></tr>
<tr><td>8인 가구</td><td>6,233,879원 이하</td></tr>
</table>
</td></tr>
<tr><td rowspan="2">자산</td><td>총자산가액</td><td>•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td></tr>
<tr><td>자동차가액</td><td>•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td></tr>
</table>

4. 입주자선정

※ 우선 및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우선 및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이하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른 순위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배점합산 순위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른 순위**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12.24.)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12.24.)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1970.12.24. 이전 출생	만 40세 이상 1980.12.24. 이전 출생	만 30세 이상 1990.12.24. 이전 출생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2001.12.24. 이후 출생자	3자녀 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사회취약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⑩ 남원읍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 2점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5.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0.12.2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다음 서류를 꼭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현장신청시 본인 혹은 대리인 확인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예비배우자 포함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신청자) 도장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제출서류(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table>
<tr><th>구비서류</th><th>내 용</th><th>부수</th></tr>
<tr><td>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td><td rowspan="2">•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td><td>1통</td></tr>
<tr><td>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td><td>1통</td></tr>
<tr><td>자산 보유 사실확인서</td><td>•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미충족시 계약해지처리 될 수 있음</td><td>1통</td></tr>
<tr><td>주민등록표등본</td><td>•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u>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u>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td><td>1통</td></tr>
<tr><td>주민등록표초본</td><td>※ <u>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u></td><td>1통</td></tr>
<tr><td>가족관계증명서 (상세)</td><td>•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td><td>1통</td></tr>
<tr><td>청약순위확인서</td><td>•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plyhome.co.kr)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주의) 청약순위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 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구분</th><th>조회방법</th></tr>
<tr><td>인터넷이 가능할 경우</td><td>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종류 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 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td></tr>
<tr><td>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td><td>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td></tr>
</table>
※ 주택관리번호 : 2020001431</td><td>1통</td></tr>
</table>

■ 추가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대상	발급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주민센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기소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건설근로자 공제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민센터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2)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3)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지방보훈청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2)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시.군.구청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주민센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건강 보험공단 / 주민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련기관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국민건강 보험공단 / 주민센터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2자녀 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의료기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6.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 소명

- 주택소유여부,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접수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1.04.29.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jpdc.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추첨하여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은 절대 불가하며, 계약포기 시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 기회가 넘어갑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유선으로 통보해드리며,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가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유선전화 및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합니다.**

■ 계약안내

○ **현장 계약 〔계약기간: 21년 05월중, 개별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 주거복지팀(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 빌딩 C동 102호)**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table>
<tr><td></td><td>
<table>
<tr><td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d><td colspan="2">할증비율</td></tr>
<tr><td>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d><td>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d></tr>
<tr><td>10%이하</td><td>100%</td><td>11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30%초과 50%이하</td><td>120%</td><td>140%</td></tr>
<tr><td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td><td colspan="2">할증비율</td></tr>
<tr><td colspan="2">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td></tr>
</table>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전출, 사망, 이혼, 혼인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td></tr>
<tr><td>신청자격</td><td>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td></tr>
<tr><td>예비입주자</td><td>
• 공급대상자별 예비입주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 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td></tr>
<tr><td>중복입주 금지</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td></tr>
<tr><td>신청서류</td><td>
• <u>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u>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td></tr>
<tr><td>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td><td>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본다.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td></tr>
</table>

지구 및 단지 여건

※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특성

- 본 단지는 **의귀리마을회 소유 부지**를 활용(무상대부)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 본 단지는 **전용면적 59㎡ 14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주차대수는 15대**(장애인1대, 경차1대 포함)로서 지상주차장 입니다.
- 단지 내에 LPG가스저장소(지상)가 설치되고, 가스배관을 통해 각 세대로 가스를 공급합니다.
- 보일러는 발코니에 설치되고, 세탁기/에어컨 등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상 1층에 설치되는 **지역커뮤니티공간 및 전통문화체험공간은**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주요마감재

- 식탁을 제외한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화장대) 설치 예정



항 목		주요 마감		
건축	현관	바닥: 폴리싱타일, 가구: 신발장		
	방/거실	벽,천정: 친환경 실크벽지, 바닥: 중보행용 룸카펫, 가구 : 안방 화장대		
	화장실	벽/바닥: 도기질/자기질 타일, 기타: 욕실장, 위생도기류		
	주방	주방가구(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포함), 가스쿡탑 ※식탁 제외		
전기	조명기구	LED	무인경비시스템	공동현관 로비폰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홈오토시스템	설치
	월패드	10인치 터치스크린(홈오토 연동)		
기계	보일러	가스보일러(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에어컨	냉방용 배관 매립(거실,침실1)		

※ 상기 마감자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생활권 및 환경권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필로티, 휴게공간 등) 및 부대시설 설치로 인근세대는 생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분리수거시설이 설치된 경우 소음과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 배치상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 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반사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오전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단지 비상도로 및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용 카메라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간 프라이버시 침해 및 동일층 내 호별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사 및 설치** • 에어컨 설치 시 거실, 침실-1은 냉방용 배관이 벽체에 매립되어 있어 연결 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침실-2, 침실-3의 경우 사전 협의 하에 벽체 타공 후 설치를 요합니다. 퇴거 시에는 에어컨 설치 부위는 입주자가 설치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별도의 에어컨 설치 시 지정된 장소(입주 시 안내)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또한 기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열 및 환기** • 습도가 높은 날 창을 열어두거나, 동절기 등 실내외 온도차가 큰 시기에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 등으로 습도가 높은 실내 환경이 조성될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실내 환기 등을 통한 결로 발생 예방이 필요합니다.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 •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입주자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 이외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 화재 예방을 위해 주방가구 상부장과 발코니 보일러 상단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 주방 가스쿡탑과 발코니 보일러 인근에 가스감지기 및 가스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보일러 가스 누출 발생 시 보일러 인근에 경보기가 설치되어 작동합니다. • 공용부위(복도, 승강기 등)에 물건 적치는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 대피용 완강기는 3, 4층 세대의 베란다에 설치됩니다. **■ 에너지 성능 등급**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었습니다. **■ 기타** •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 실별치수는 시공오차 범위 내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별가구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꺾이는 일부 평형("ㄱ"형 또는 "ㄷ"형)은 문짝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스사용량은 각 세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 [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 위치, 창호 종류 및 위치, 벽체 등) 포함] 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발코니에 개폐 가능한 갤러리창(실외기 설치장소)이 설치되며, 갤러리창은 강풍 시 우수유입이 일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천장 및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 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세탁기용 콘센트의 위치에 따라 별도의 연결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연결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접수 취소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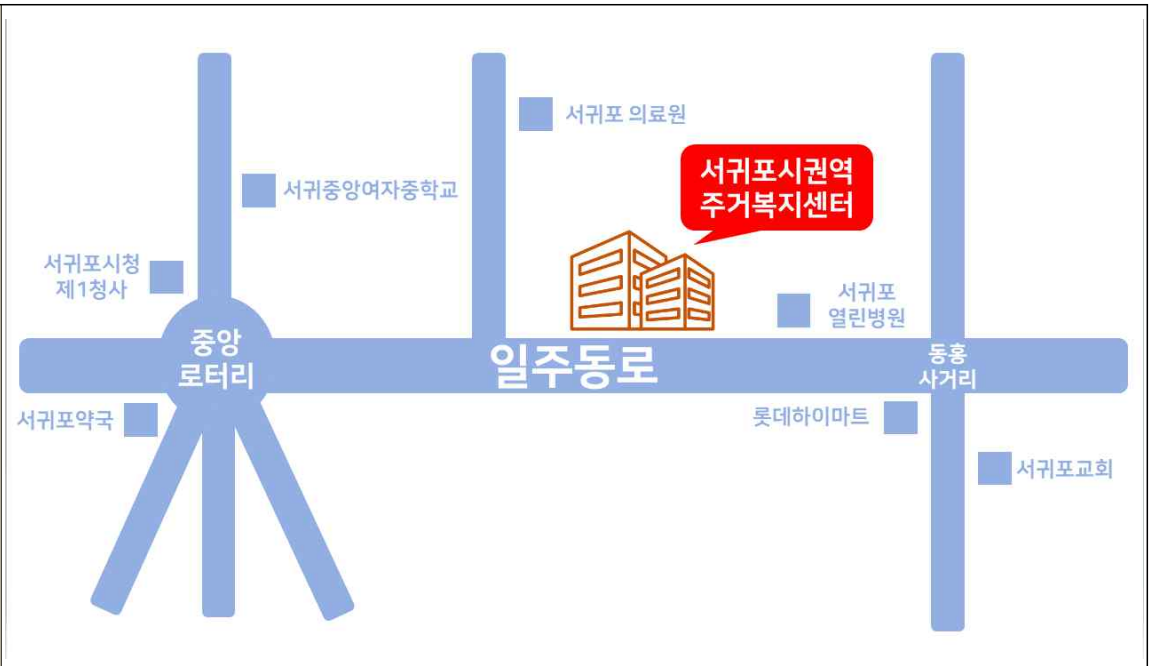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주택명	사업주체 및 감리	주택주소	시공업체
의귀 국민임대주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812	헤르지아건설(주)



10. 현장접수 장소 안내

약도	
주소	• 주소 (우편번호 6358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6 1층 서귀포권역 주거복지센터 【열린병원 하차】 - 남원 : 510, 서귀포 : 611, 612, 623, 624, 627 【중앙로터리 하차】 - 남원 : 101, 201, 231, 232 제주시 : 181, 281 서귀포 : 622, 633, 615, 625 등 **※ 중앙로터리에서 도보로 7분정도 소요됩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알고 계신 부조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http://www.jpdc.co.kr), ☎ 064-755-311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자발적 청렴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 및 제주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 임직원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과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이나 편의제공 등을 하지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 중 부패행위를 확인하셨거나 비위행위를 알고 계신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청렴신문고 '클린신고센터'로 의견을 주시면 원칙과 규정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20. 12. 2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